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

h·well 국민건강보험

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.

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이 개정('25년 7월 1일 시행)되어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(이하 '유효기간')이 연장 적용되었습니다.

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**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**입니다.

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**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**, **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**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.

② **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**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**새로운 계약을 체결**(**계약서 작성 필수**)하고, **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**하시기 바랍니다.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, 대상자에게 **[붙임1]**과 같은 안내문(7월 1~4일 순차적 발송으로 약 2주 소요 예상)을 발송하였습니다.

시행령 개정 시행일 기준, 연장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수급자가 제시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(복지용구 포함).

기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	별도 서류 없이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(수급자) 제시 및 확인
새로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	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(수급자) 제시 및 확인

※ 안내문은 **재발급이 불가**하므로, 분실하였다면 연장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인정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서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. 기관에서 안내문 보관은 불필요합니다.

※ 수급자의 생년월일 등 **본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** 바랍니다. 동명이인 등 타인 명의 등록 시, 급여비용 착오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 1부.
2.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관련 계약통보 Q&A 1부.

☏ **고객센터 1577-1000 및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**